

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11. 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11. 14. 장영준 의원 외 10명
- 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7.
- 다. 상정일자: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11. 26.)
-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남해석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- 일회성 폐기물 중 하나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현수막, 친환경 소재, 재활용에 대하여 정의하고,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
- 구청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,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·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조제1항~제3항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7호가목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7호
- 입법예고 : 2025. 11. 7. ~ 2025. 11. 12. 결과: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① 조례의 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장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회성 폐기물 중 하나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② 주요 제정 내용

- 제1조(목적):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.
- 제2조(정의): 현수막, 친환경 소재, 재활용의 개념을 각각 정의함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
구청장은 실행계획 수립, 지원,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함.
- 제4조(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)
공공 및 사업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, 전용 게시대 설치, 기관·단체 대상 권고도 가능함.
- 제5조(재정지원):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사업 등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가능.
- 제6조(교육 및 홍보): 구민 대상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가능.
- 제7조(협력체계 구축):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.

③ 제정 내용 검토

○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

-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며, 의무 부과나 규제 조항이 없고,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함.

○ 조례안의 필요성

- 2024년 전국 폐현수막은 5,408톤 발생하였으며, 이중 1,801톤만 재활용(재활용률 33.3%)
- 이는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 6,130톤, 재활용률 29.6%에 비해 발생량은 11.8%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3.7% 소폭 상승한 수치임
-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염화비닐(PVC)소재로, 미세플라스틱 발생, 매립·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큼.
-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응 필요

○ 조례안의 기대효과

- 마포구 공공 현수막 제작·제작 과정의 친환경 전환 유도
-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로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
- 환경 인식 개선 및 주민 참여 확대 기반 마련
- 친환경 소재 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 진흥 효과

○ 개선 및 주의사항

-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되, 사전 심사나 평가 없이 지원 시 재정집행의 불균형, 형평성 논란이 발생 할 수 있음.
- 관내 기관·단체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‘권고’할 수는 있으나, 의무화 하지 않아 민간 실천 유도가 어려움.
- 친환경 소재는 일반 소재 대비 단가가 높고, 출력업체의 대응도 제한 될 수 있음.
-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나 재활용에 대한 구민 일반의 인식이 낮은 경우 참여율 저하 가능성 있음.

④ 자치구별 조례 운영 현황

-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 중 총 14개 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
(강동구, 강북구, 관악구, 광진구, 구로구, 금천구, 노원구, 동작구, 성북구, 종로구, 중랑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은평구)
- 서울시·자치구 폐현수막 관리 '원스톱 시스템' 시범 운영
 - 서울시가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(중랑물재생센터 내)을 설치하여 현수막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용산구·광진구와 시범 운영하고 있음

⑤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, 「옥외광고물관리법」 등 관련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와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수단으로, 법적 정당성과 행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 기준, 재정지원 범위의 구체성, 적용 대상 확대 시기 및 방안 등은 시행규칙 또는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환경정책기본법」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 <개정 2021. 1. 5.>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., 2021. 1. 5.>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(기기,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3. 24., 2025. 10. 1.>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·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[전문개정 2008. 3. 21.] [제20조에서 이동 <2008. 3. 21.>]

「폐기물관리법」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129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 5. 17., 2009. 6. 9., 2010. 1. 13., 2010. 7. 23., 2015. 1. 20., 2017. 1. 17., 2025. 10. 1.>

7. “재활용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가. 폐기물을 재사용 ·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·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35811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“광고물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 <개정 2014. 12. 9., 2016. 7. 6., 2018. 5. 28., 2019. 4. 30.>

7. 현수막: 천 · 종이 · 비닐 등에 문자 ·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, 지주,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